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 사 보 고 서

2024. 9. 1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4. 8. 13. 성북구청장 제출(의안번호 320호)

나. 회부일자: 2024. 8. 28.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06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 9. 11.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고영룡 기획재정국장)

1. 제안이유

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일반회계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에 예탁하여, 향후 세수 감소 등 재정여건 악화 시 일반회계 재원으로 활용

나. 2023회계연도 건축안전특별회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차액 및 보조금반환금 발생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탁금 축소로 인한 기금운용계획 변경

2. 주요내용

가. 기금설치 개요

- 1) 설치근거 :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제7조
- 2) 설치목적 :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기금 운용 상 여유자금의 통

합적 관리

3) 설치연도 : 2020. 12. 31.

나.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1) 기금사업의 목표

- 각종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여 효율적으로 활용

다. 2024년도 기금사업 주요 변경개요

1) 기금변경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기정예산	변경예산	증감액
기금규모(수입·지출)	44,282,065	81,285,878	37,003,813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수입계획 변경

(단위 : 천원)

구 분	기정예산(A)	변경예산(B)	증감액(B-A)	증감내용
계	44,282,065	81,285,878	37,003,813	
예치금회수	42,748,292	42,748,292	0	
예수금수입	260,095	36,905,259	36,645,164	(증)일반회계 36,762,068천원 (감)건축안전 116,904천원
이자수입	1,273,678	1,632,327	358,649	(증)예수금 증가에 따른 이자수입 증가 예상분

○ 지출계획 변경

(단위 : 천원)

구 분	기정예산(A)	변경예산(B)	증감액(B-A)	증감내용
계	44,282,065	81,285,878	37,003,813	
일반예치금	33,115,634	70,119,447	37,003,813	(증)연도말 기금조성액
예수금원금상환	11,166,431	11,166,431	0	통합계정→일반회계 원금상환

3) 2024년도말 기금조성액

(단위 : 천원)

조 성 액	사 용 액	2024년말 조성액(잔액)
81,285,878	11,166,431	70,119,447
· 예치금회수 : 42,748,292 · 예수금수입 : 36,905,259 · 이 자 수 입 : 1,632,327	예수금원금 상환 (통합계정 → 일반회계)	2025년도 이월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5. 검토의견

□ 개요

- 본 변경안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일반회계 예탁금과 2023회 계연도 건축안전특별회계 결산 결과에 따른 예탁금이 축소되어 2024년 수입·지출계획을 변경하고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따라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임.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6조¹⁾에 따라 회계

1) 제1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기금 운용상 여유자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

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회계
· 기금 운용상 여유 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기금임.

□ 주요내용

-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수입계획 중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일반회계 예탁금(367억 6,206만원)과 '23회계연도 건축안전특별회계 결산 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차액 및 보조금 반환금 발생에 따른 감소분 (1억 1,690만원)을 예수금수입에 반영하고, 예치금수입 증가에 따른 이자수입 증가 예상분(3억 5,864만원)을 수입계획에 반영하고, 지출계획은 수입계획과 연동하여 지출계획 중 일반예치금(370억 381만원)에 반영하고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것임.

□ 종합의견

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이 조에서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③ 통합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④ 재정안정화 계정은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⑤ 재정안정화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로의 전출

2. 지방채 원리금 상환

⑥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기금의 조성, 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 6. 9.]

- 이상과 같이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출계획 중 정책사업인 일반예치금을 당초 지출계획보다 111.74%, 370억 381만원 증액하여 변경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제2항2)에 따르면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는바, 관련 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안임.
- 본 기금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제출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같이 예치하고, 필요시 지출계획을 추가적으로 변경하여 운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 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 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 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5. 7. 24.>
1.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2.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3.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202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 사 보 고 서

2024. 9.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4. 8. 13. 성북구청장 제출(의안번호 322호)

나. 회부일자: 2024. 8. 28.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06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 9. 5.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맹홍재 안전생활국장)

1. 제안이유

○ 2023년도 결산을 반영하여 2024년 성북구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설치 개요

1) 설치근거 :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제20조

2) 설치목적 : 중소기업육성발전 지원

3) 설치연도 : 1993년

나.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1) 기금사업의 목표

○ 기술과 사업성은 우수하나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자금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여 중소기업 경쟁

력

강화와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2) 2024년도 기금사업 개요

- 사업내용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저리 융자 지원
- 지원대상 : 성북구에서 경영 중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지원기준
 - 금리 및 융자기간 : 연 1.2%,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 융자한도 : (담보) 최대 1억 원 이내, (신용) 최대 5천만 원 이내

다. 2024년도 기금 운용 계획 변경 개요

1) 변경 사유

- 2023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감소분 반영
- 2024년도 4월 융자금 회수액 반영

2) 2024년도 기금변경 내역

- 2023년도 기금 결산 현황

(단위:원)

조성액			당해연도 사용액 (라)	당해연도말 조성액 (마)=(다)-(라)
전년도말 (가)	당해연도 (나)	계 (다)=(가)+(나)		
2,674,884,530	2,026,683,191	4,701,567,721	2,925,830,806	1,775,736,915

- 2024년도 기금 변경 총괄

(단위:천원)

구 분	기정예산	변경예산	증
기금 총 운용액	3,117,232	3,138,010	20,778

3) 수입 및 지출 계획 변경(안)

○ 수입계획 변경

(단위 : 천원)

항 목	기정예산(A)	변경예산(B)	증감액(B-A)	증감내용
계	3,117,232	3,138,010	20,778	
융자금 회수 (이자 포함)	1,051,753	1,282,274	230,521	2024년 4월 융자금 회수액 반영
예치금 회수	1,985,479	1,775,736	-209,743	2023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 감소
이자 수입	80,000	80,000	-	

○ 지출계획 변경

(단위 : 천원)

사업명-편성목	기정예산(A)	변경예산(B)	증감액(B-A)	증감내용
계	3,117,232	3,138,010	20,778	
비용자성 사업비	102,750	102,750	-	
융자성 사업비	3,000,000	3,000,000	-	
예치금	14,482	35,260	20,778	

○ 2024년도 기금 조성(안)

(단위:천원)

조 성 액		사 용 액		2024년말 조성액 (잔 액)
3,138,010		3,102,750		35,260
·용자금 회수: 1,282,274 ·예치금 회수: 1,775,736 ·이자 수입: 80,000	-	·비용자성 사업비: 102,750 ·용자성 사업비: 3,000,000	=	· 2024년도로 이월(예치금)

- 당초 '23. 9월 예측했던 용자금 회수액 대비 실제 원금 및 이자금 회수액 증가로 차이 발생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제20조

5. 검토의견

□ 개요

○ 본 변경안은 2024년도 용자금 회수액과 2023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른 예치금이 감소되어 2024년 수입·지출계획을 변경하고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 따라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임.

○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59조³⁾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제20조⁴⁾에 따라 관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3) 「지방자치법」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4)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제20조(중소기업육성기금) ① 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운영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이 조에서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0.12.31.)

위한 저금리 융자지원 등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임.

□ 주요내용

○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수입계획 중 2024년 4월 융자금회수액(이자포함) 2억 3,052만원과 ' 2023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른 예치금 회수 감소분 2억 974만원을 수입계획에 반영하고, 지출계획은 수입계획과 연동하여 지출계획 중 예치금에 2,077만원을 반영하고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것임.

□ 종합의견

○ 이상과 같이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출계획 중 정책사업인 예치금을 당초 지출계획보다 143%, 2,077만원 증액하여 변경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제2항5)에 따르면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는바, 관련 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안임.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0.12.31.)

1. 일반회계 전입금 (개정 2020.12.31.)
2.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개정 2020.12.31.)

③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5.14, 2020.12.31.)

1. 중소기업자 및 소기업자 또는 벤처기업의 시설자금, 운영자금 및 기술개발자금 융자
2. 금융기관의 저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3. 중소기업 및 중·소상공인의 육성·지원을 위한 사업비 출연(서울신용보증재단 등)
4. 기금의 운용·관리 및 중소기업제품 홍보 활동을 위한 필요한 경비 (개정 2015.5.14, 2020.12.31.)

5)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 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5. 7. 24.>

1.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2.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3.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 본 기금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제출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같이 지출계획을 변경하여 운용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 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